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24일,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2.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재산은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임.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없이는 경제적 착취 등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발달장애인의 이런 취

약성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부모 역시 자신들의 고령 등으로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시점 또는 사후에 발달장애 자녀에게 상속시킬 재산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의 소득 또는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와 욕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발달장애인 가정의 재산관리에 대한 지원과 경험은 부모 사후 이전에 시작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실제로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큼.¹⁾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국민연금 공단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왔음.

동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소득 또는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신의 욕구와 취향,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책임 아래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계약에 기반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재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산 ‘관리’ 및 ‘사용’ 지원 사회서비스라 할 수 있음.

개정안은 이 같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운영·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재산 또는 공적·사적 이전소득을 착취나 경제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당사자의 수요와 욕구에 맞게 적절히 관리·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를 민간 금융기관이 아닌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공적기관에서 제공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소병훈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같은 취지를 법률로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김예지의원안의 경우는 ‘이용절차, 계약기재사항, 재산관리·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을

소병훈의원안에서는 ‘제공 절차,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계약 기재사항, 재산 관리·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이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을 적용받는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같은 취지에서 계약 해지의 자유 보장 및 서비스 종료 후 수탁재산이 착취 등에 쉽게 노출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 해지 절

차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위임사항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²⁾

둘째, 소병훈의원안은 김예지의원안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을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위탁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업무의 일부를 다시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실시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탁기관으로 신탁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개인별재정지원계획 등 현장 업무의 일부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수행하는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기관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김예지의원안과 비교하여 두 개정안 중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의가 필요함.

셋째, 개정안이 현재 실시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미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2)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중 최보윤의원 지적 내용을 반영함.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